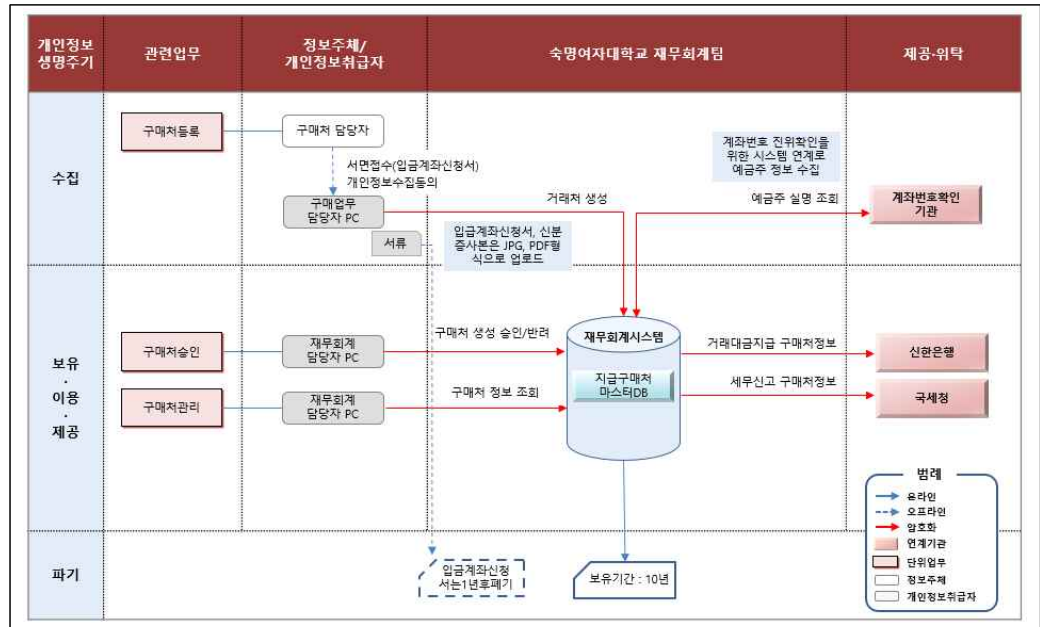


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						
공공기관 명		숙명여자대학교				
평가기관		(주)케이씨에이	평가 기간	2024. 11. 18. ~ 2024. 12. 27.	평가 예산	☐ 1천만원 미만 ☒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 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 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☐ 1억원 이상
평가 대상 시스템 개 요	시스템명	재무회계시스템 '지급구매처 마스터파일'			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	기구축
	추진개요 및 목적	대학 학사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재무회계 서비스 제공				
	추진성격	대상여부	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고유식별정보 처리		추진예산	-
		추진주체	숙명여자대학교			
		추진근거	-		추진유형	☐ 신규 구축 ☐ 고도화 ☒ 운영
	신기술 유형	해당 없음				
	주요내용	- 구매처 등록·변경 및 승인 처리 - 국세청 세무신고 및 거래대금 지급 처리				
운용체계 변경내용	해당 없음					
개 인 정 보 파 일 개 요	파일명	정보주체 수	개인정보 항목		제3자 제공	개인정보 처리 목적
	지 급 구 매 처 마스터 파일	101,012건	필수 : 이름, 주민등록번호(외국 인등록번호, 여권번호), 주소, 전 화번호, 이메일주소, 거주지국, 계좌정보(은행명, 계좌번호, 예 금주) 선택 : 없음		국세청	세무신고 및 대금지급 처리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	1. 개인정보 생명주기 요약 - 수집 : '지급구매처 마스터파일'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(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)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하며, 그 외의 개인정보는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있음 - 보유 및 이용 :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인정보 이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용함 - 제공 : 세무신고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며,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- 파기 :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지 않으나,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사하 여 일괄 파기하고 이력을 관리할 계획임				

2. 개인정보 흐름도



영향평가기준

평가기준
변경사항
및 사유

주요
평가기준

-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: 6개 평가분야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, RFID, 생체인식정보, 위치정보, 가명정보,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)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에서 제외함
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“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(제2024-07호, 2024.04.03.)”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4개 평가영역, 21개 평가분야, 46개 세부분야, 7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함

평가기준에
따른 개인정보
침해요인
분석·평가

-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
 - 개인정보취급자 관리(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), 개인정보파일 관리(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), 개인정보 처리방침(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31조)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
 - 개인정보 수집은 금융실명법 제3조,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고, 소득세법 제127조, 제144조, 제14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
-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사항에 따른 분석평가
 -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인정보 침해대응, 정보주체 권리보장, 개인정보파일 관리,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
 - 개인정보 수집, 보유 단계의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접근통제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악성 프로그램 방지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
- 위험요소
 - 내부 관리계획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들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음
 - 개인정보 보유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되어 보존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,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 위험성이 높아짐
 - 접근권한 내역을 기록·보관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 발생 시 정당한 취급자에게 정당하게 접근권한이 부여 되었는지에 대한 책

		임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, 접속기록에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, 접속일시, 접속지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등이 모두 포함되어 기록되지 않을 경우 언제, 어디서, 누가, 어떤 정보에 접근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
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1.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, 개인정보처리 실태 및 관행의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 2.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보유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파기 3. 접근권한 발급이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자, 승인자, 등록자, 등록 일시, 신청사유, 접근권한명 등이 모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, 시스템(서버, DBMS)의 접속기록을 식별자, 접속일시, 접속지 정보,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,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여 기록·보관하도록 관리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▪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보유상태 확인
평가결과		▪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을 이행(67%)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을 부분이행(22%), 1개 항목을 미이행(11%)하고 있고, 1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 ▪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6개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을 이행(83%)하고 있으며,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(17%)하고 있음 ▪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25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을 이행(80%)하고 있으며, 2개 항목을 부분이행(13%), 1개 항목을 미이행(7%)하고 있고, 10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 ▪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36개 평가항목 중 24개의 항목을 이행(73%) 하고 있으며, 7개 항목을 부분이행(21%), 2개 항목을 미이행(6%)하고 있고, 3개 항목이 해당없음으로 평가되었음